

성남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527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1. 7.

제 안 자 : 정훈 의원 14 인

□ 제안이유

- 전자·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신분증의 기능이 다양화 됨에 따라, 기존 종이소재의 신분증을 개선하여 소재의 제한을 없애며, 출입관리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
- 기존의 단순한 제작안을 개선하여 성남시의회 심볼마크 삽입 등 성남시의회 CI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제작하고자 함
-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디자인 및 기재사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

□ 주요내용

1. 신분증 소재의 제한을 없애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수 있도록 개정(안 제3조 제2항)
2. 성남시의회 CI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제작
(별표)

□ 개정 규칙안 : 별첨

성남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

성남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 제목 “(신분증 규격·제식 및 색상)”을 “(신분증 규격·제식 및 기능)으로 변경하고,

제②항의 내용 “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연두색으로 한다”를 “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수 있다”로 변경한다

제③항 “별표의 디자인 및 기재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성남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변경할 수 있다”를 신설한다

제4조 내용 “신분증은 성남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발급한다”를 “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”로 변경한다

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 중 “첨부 : 사진2매”를 “첨부 : 사진1매 또는 사진파일”로 변경한다

별표 내용 전체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표



(앞)



(뒤)

○ 규 격 : 54×85mm

○ 기재사항

· 앞면 : 사진, 성명(영문포함)

신분증 규격 가로 54mm x 세로 85mm

- 사진 30mm x 35mm
- 한글성명 : 2002월드컵체, 13포인트
- 영문성명 : 윤고딕120, 8포인트

· 뒷면 : 발급번호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임기, 발급일

- 성남시의회의의원신분증 : 윤고딕130, 9포인트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임기 : 윤고딕130, 9.5포인트, 글폭: 가로83% 세로91%, 자간-50
- 성남시의회의장 : 윤고딕120, 8포인트, 글폭: 가로90% 세로91%, 자간-50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신분증규격·제식 및 색상) ① <생략>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연두색으로 한다	제6조(신분증규격·제식 및 색상) ①(현행과 같음) ②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 ③ 별표의 디자인과 기재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성남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변경할 수 있다
제4조(신분증의 발급권자) 신분증은 성남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발급한다.	제4조(신분증의 발급권자)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
별지 제2호 서식	별지 제2호 서식
신분증재발급신청서 - 성명 - 주민등록번호 - 신분증 번호 - 재발급신청사유 첨부 : 사진 2매 <이하 생략>	신분증재발급신청서 1~4 현행과 같음 첨부 : 사진 1매 또는 사진 파일 <이하 현행과 같음>

성남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(이하 “신분증”이라 한다)의 규격 ·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성남시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 (신분증규격 · 제식 및 기능)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,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 하되, 그 규격 ·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

②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수 있다.

③ 별표의 디자인 및 기재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성남시의회회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 (신분증의 발급권자)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 한다.

제5조 (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)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.

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.

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 (신분증의 반납등)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
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정 1991.04.08 규칙 제074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1999.06.09 의회규칙 제0009호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발급한 의원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하며, 종전의 의원신분증은 재발급 할 때까지 유효하다.

부 칙 <개정 2011. 5. 의회규칙 제 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